

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7일

발의자 : 이영아 의원

1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, 대행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함(안 제23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17. ~ 1. 25.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7. 부서협의 결과

○ 관계부서(건축과)협의결과 건축물 현장점검 및 책임소재에 따른 대행수수료(2021기준 면적3,000㎡ 1인당 4시간/1일 184,000원)의 적정여부에 대하여, 경기도 내 타시군 사례조사 결과 모두 건축물의 연면적 비례 지급하고 있고, 우리시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례 지급하여 대행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수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의견임.

※ 상기 내용이 포함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관계부서(건축과)에서 입법예고 중임(입법예고기간 : 2022.1.26.~2022.2.15.(20일간))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호 중 “4시간/1일”을 “8시간/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건축법

제27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·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□ 건축법 시행규칙

제21조(현장조사·검사업무의 대행) ①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

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허가권자는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

제31조(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)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.

④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